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가단1499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울

담당변호사 조연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정희, 손상우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백유란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10. 2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12.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2. 7. 접수 제289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와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441호로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중이던 2011. 4. 5. 원고와 주식회사 D 및 C 사이에, 주식회사 D와 C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1. 5. 31.까지 물품대금 79,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이를 어기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위 화해조서에 의해 확정된 원고의 C에 대한 금전채권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나. C의 아버지인 E은 2019. 12. 27.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C, F, G, 피고(각 상속지분 1/4)가 있다.

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은 2019. 12. 27.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하여 앞서 본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없었다.

C의 급여가 입금되는 농협계좌에 2014. 2. 14.부터 2021. 5. 3.까지 입금된 내역이 기재된 예금거래내역서(을 제2호증)에 나타난 예금 잔액 중 최고금액은 10,808,333원(2018. 7. 12.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1/4 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로써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인 2019. 2. 14.부터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하면서 월 3,700,000원에서 3,900,000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무자력 상태가 아니어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에게 급여소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2. 14.부터 2021. 5. 3.까지 사이에 C의 급여계좌의 잔고가 10,808,333원을 넘은 적이 없는바,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위

급여소득만으로 원금만 79,000,000원에 이르고 지연이자율이 연 20%인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피고가 망인과 동거하면서 전적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지출하는 등으로 지극히 부양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사해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해 C의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1/4 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2019. 12. 27.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1/4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2. 7. 접수 제289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훈

별지

목 록

<부동산의 표시>

1동 건물의 표시

서울 중랑구 , 아파트 동철근콘크리트구조 박공지붕 및 평스라브지붕 17층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80.1913㎡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종류

서울 중랑구

대 5052㎡

대지권의 비율 5052분의 29.927

끝.

